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0 - 0122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인정제도의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시험인증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2020 세계 인정의 날」 정부포상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2020 세계 인정의 날」 정부포상 운영요령

2020. 4. 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본 포상계획 및 포상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상훈법 및 관련법령, 행정자치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포상관련 규정에 따른다.

「2020 세계 인정의 날」 정부포상 운영요령

이 요령은 세계 인정의 날을 기념하고 시험인증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2020 세계 인정의 날」 행사에서 수여할 정부포상에 대한 세부 시행사항을 정한다.

1. 기본 방향

- 신뢰성 높은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을 돕고 국내 유통제품의 소비자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
- 시험·인증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
-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에 의거 포상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2. 주최 및 주관

-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주 관 : 한국계량측정협회

3.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 5. 4.(월)

4. 포상일시 : 「2020 세계 인정의 날」 기념 행사에서 포상

* 행사일정 : 2020. 6. 19(금), 국가기술표준원(충북 음성군)

5. 포상의 종류와 대상

포상 부문		신청 대상	포상 및 규모
개인	KOLAS	○ 신뢰성 높은 시험인증서비스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장관 표창(7점) ○ 원장 표창(6점)
	KAS	○ 신뢰성 높은 제품 인증심사를 통해 국내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	
	KAB	○ 신뢰성 높은 경영시스템 인증 심사를 통해 국내기업의 경영시스템 정착에 기여한 자	
단체	KOLAS	○ 신뢰성 높은 시험인증서비스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단체)	○ 장관 표창(5점)
	KAS	○ 신뢰성 높은 제품 인증심사를 통해 국내기업의 품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기업(단체)	
	KAB	○ 신뢰성 높은 경영시스템 인증 심사를 통해 국내기업의 경영시스템 정착에 기여한 기업(단체)	

* 신청대상

(개인부문) KOLAS, KAS분야 평가사·종사자, KAB분야 인증기관 소속 인증심사원
(단체부문) KOLAS, KAS 공인기관 및 KAB 인증기관

- 수공기간은 3년 이상 적합성평가(KOLAS, KAS, KAB)분야에서 공적을 쌓아야 함

6. 포상 추진 절차



7. 포상 심사

○ 포상심사 절차

- 서류 및 현장심사 : 관련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 및 현장심사 실시
- 주관기관 포상심의회위원회 : 포상 추천 후보 대상 선발
- 공적심사위원회 : 공적심사를 통한 훈격 별 후보자 선정

구 분	주관기관(포상심사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주체	한국계량측정협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역 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검토 ▪ 포상 추천 후보자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추천 대상자의 훈격 결정
심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의 공적 및 현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상 후보자 공적심의 및 후보자 선정

8. 포상 추천제한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신청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자 또는 단체는 2년(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분야별 포상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기 타
 - 기타 이 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처리지침」에 준함

9. 포상 후보자 신청 및 접수

- 신청서류 접수 기한: 2020. 5. 4.(월)까지(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서식은 국가기술표준원(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www.knab.go.kr), 한국인정지원센터(www.kab.or.kr), 한국계량측정협회(www.kasto.or.kr),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www.kotica.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계량측정협회 교육훈련사업부 조성민 주임
 - 주소 : (우)06710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길 47(서초동 1484-9)
 - 전화 및 e메일 : 02-3489-1366, hlemmer@naver.com
- @kasto.or.kr
 - * 신청접수는 E-mail 송부 후 원본 제출(우편 또는 방문)

10. 제출서류

○ 유공자(개인) 분야

제출 서류	수량	서식	비 고
1. 유공자 포상 신청서	1부	제1호	
2. 개인심사기준표	1부	제4호	증빙 자료 포함
3. 공적조서	1부	제6호	증빙 자료 포함 (분량제한 없음)
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제7호	
5.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제8호	

○ 유공기업(단체) 분야

제출 서류	수량	서식	비 고
1. 유공자 포상 신청서	1부	제2호	
2. 단체부문평가표	1부	제3호	증빙 자료 포함
3. 공적조서	1부	제5호	증빙 자료 포함 (분량제한 없음)
4.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제7호	

※ (개인 및 단체 공통) 공적조서 및 공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많을 경우
책자 형태로 제출 가능

11. 기타사항

- 동 운영요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따른다.
- 포상 심사선정에 있어 세부적인 절차나 지침 또는 본 운영요령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시행일 및 유효기간 : 본 정부포상운영요령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여, 포상 행사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별지
1. 유공자 포상 신청서
 2. 유공단체 포상 신청서
 3. 단체부문평가표
 4. 개인심사기준표
 5. 공적조서(단체부문)
 6. 공적조서(개인부문)
 7.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8.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KOLAS 공인기관 자체평가표

□ 기관명 :

【세부평가를 위한 채점표】

○ 최고경영자의 리더십(10)

평가항목	점 수	2.5
최고경영자가 표명한 조직의 비전 및 의지		
최고경영자가 설정한 조직의 방침 및 목표		
최고경영자의 이해관계자 및 조직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사회적 책임(예: 윤리경영, 사회공헌, 부패방지 등) 관련 의지 및 활동		

※ 관련 자료를 요약 제출하고, 현장조사 시 최고경영자 면담 등을 통해 정성적 평가

○ 인정현황분야(40)

평가항목	점 수				
	10	8	6	4	2
직전 3개년 간 KOLAS 공인성적서 발행 수(건)	100건 이상	80건 이상 100건 미만	50건 이상 80건 미만	30건 이상 50건 미만	30건 미만
직전 3개년 간 총 성적서 발행 건수 대비 KOLAS 공인성적서 발행 비율(%) ※ KOLAS 성적서 발행 건수가 10건 이하인 경우 발행비율에 관계없이 2점 부여	80% 이상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20%이상 40%미만	20% 미만
직전 3개년 간 총 성적서 발행 건수 대비 KOLAS 공인성적서 해외 발행비율(%)	15% 이상	10% 이상 15% 미만	5% 이상 10% 미만	1% 이상 5% 미만	1% 미만
품질책임자(정/부) 및 기술책임자(정/부)의 해당 기관·직무 근속연수 평균(년)	4년 이상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 적합성평가정책 및 표준화 기여도(20)

점 수		5	4	3	2	1
내 용						
직전 3개년 간 한국산업표준/단체표준/국제표준/KOLAS 운영요령, 지침 등 제·개정 제안 관련 활동 참여(회)	4회 이상	3회	2회	1회	없음	
직전 3개년 간 KOLAS 평가 참여(회) ※ 기술전문가로 참여한 경우는 포함하며, 평가사보로 참여한 경우는 제외	10회 이상	7회 이상 10회 미만	4회 이상 7회 미만	1회 이상 4회 미만	없음	
직전 3개년 간 KOLAS 공식행사 참여(회) ※ KOLAS가 주최하는 인정의 날 행사, 국제세미나 등 포함 (참석횟수×인원수)	20회 이상	15회 이상 20회 미만	10회 이상 15회 미만	5회 이상 10회 미만	1회 이상 5회 미만	
점 수		10	8	6	4	2
내 용						
직전 3개년 간 KOLAS 공인업무 관련 직원들의 전문화 교육/훈련 실시비율(%) ※ KOLAS 업무 관련자(품책,기책,실무자)로 자격이 부여된 직원 1인당 연간 교육/훈련 실시 횟수 비율 (3년 평균, %)	300%이상	250%이상 300%미만	200%이상 250%미만	150%이상 200%미만	100%이상 150%미만	

※ '직전 3개년 간 KOLAS 평가 참여' 및 '직전 3개년 간 KOLAS 공식행사 참여' 실적은 각각 5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둘 중에 높은 점수를 채택함

○ 시험결과의 품질보증(30)

점 수		10	8	6	4	2
평가항목						
KOLAS 사무국이 인정하는 숙련도시험	참가실적 (직전3개년간)	180% 이상	160% 이상 180% 미만	140% 이상 160% 미만	120% 이상 140% 미만	100% 이상 120% 미만
	불만족 비율 (직전3개년간)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기관내부 품질보증 활동	내부 품질보증 활동비율 (직전3개년간)	60% 이상	45% 이상 60% 미만	30% 이상 45% 미만	15% 이상 30% 미만	15% 미만

숙련도시험은 만 3년에 중분류별로 최소 각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하므로, $[\text{3년간 숙련도 실시 총 건수} \times 100 / \text{중분류수}]$ 를 계산 시 기본 100 %부터 총 3년간 숙련도 실적이 많은 순서로 점수를 차등 부여함.

최근 3년 간 참가한 숙련도시험의 결과 중 불만족이 적게 발생된 순서로 점수를 차등 부여함. $[\text{3년 간 Outlier 발생 건수} \times 100 \% / \text{중분류 수}]$

최근 3년 간 기관 내부에서 실시된 품질보증 활동 실적이 많은 순서로 점수를 차등 부여함. $[\text{3년 간 자체 품질보증 활동 건수} \times 100 \% / \text{중분류 수}]$

* KOLAS가 인정하는 숙련도 프로그램을 제외한 내부품질보증 관련 인정평가·내부 심사·경영검토 결과 등을 반영한 품질보증 개선활동 실적 포함

○ 시험업무 관련 민원 (감점)

내 용	점수
공인기관 귀책사유에 의한 민원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직전 연도)	건당 3점 감점

※ 제외사항

- 최근 3년 이내 KOLAS 인정 등의 각종 사후관리 시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기관 및 그 임원
- 포창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서 단체표창을 받은 경우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대표자와 임원
- 기타 법률위반 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KAS 공인기관 자체평가표

□ 기관명 :

【세부평가를 위한 채점표】

○ 최고경영자의 리더십(10)

평가항목	점 수	2.5
최고경영자가 표명한 조직의 비전 및 의지		
최고경영자가 설정한 조직의 방침 및 목표		
최고경영자의 이해관계자 및 조직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사회적 책임(예: 윤리경영, 사회공헌, 부패방지 등) 관련 의지 및 활동		

※ 관련 자료를 요약 제출하고, 현장조사 시 최고경영자 면담 등을 통해 정성적 평가

○ 인증현황분야(30)

평가항목	점 수				
	10	8	6	4	2
공인제품인증 업체수(개)	50개 이상	30개 이상 50개 미만	10개 이상 30개 미만	5개 이상 10개 미만	5개 미만
직전 년도 신규 공인제품인증서 발행 수(개)	20개 이상	10개 이상 20개 미만	5개 이상 10개 미만	2개 이상 5개 미만	2개 미만
품질책임자 및 인증책임자 평균 근속 연수(년)	4년 이상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 적합성평가정책 및 표준화 기여도(20)

내 용	참여도				
	10	8	6	4	2
직전 3개년 간 한국산업표준/단체표준/국제표준/KAS 운영요령, 지침 등 제·개정 관련 활동 참여 횟수(회)	4회 이상	3회	2회	1회	없음
직전 3개년 간 소속직원의 적합성관련 세미나 강연실적(2배 인정) 또는 세미나 등 참가 실적(회)	4회 이상	3회	2회	1회	없음

○ 인증결과의 품질보증(20)

평가항목 \ 점 수	5	4	3	2	1
직전 3개년 간 이의, 불만 및 분쟁 건 수(회)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직전 3개년 간 제조자에 대한 불만 건 수(회)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평가항목 \ 점 수	5	0
직전 3개년 간 이의, 불만 및 분쟁으로 인한 인정취소 횟수(회)	없음	1회 이상
직전 3개년 간 이의, 불만 및 분쟁으로 인한 인정정지 횟수(회)	없음	1회 이상

○ 활성화 기여(20)

평가항목 \ 점 수	20	15	10	5	0
KAS 인증 관련 홍보 횟수(광고, 기사, 웹플릿 등 게재 실적)(회)	연 4회 이상	3회	2회	1회	없음

※ 제외사항

- 최근 3년 이내 KAS인정 등의 각종 사후관리 시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기관 또는 처분을 받은 임원이 재직 중인 기관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대표자와 임원
- 기타 법률위반 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KAB 인증기관 현황 확인 평가표

기관명			
평가일자		평가자	(서명)

평가 항목		평가 점수
최고경영자 리더십(10점)		
KAB 인정 기여도 (15점)	인증건수(10점)	
	경영체제 보유 수(5점)	
인증신뢰성 제고 활동 (20점)	심사실시 보장(10점)	
	인증신뢰성 제고 노력(10점)	
심사품질 검증시스템 (25점)	독립된 인원에 의한 입회평가(10점)	
	경영체제별 입회평가(5점)	
	불만 및 이의제기(5점)	
공평성 및 이해상충 예방(20점)	KAB 심사 발견사항(10점)	
	전속 심사원 활용율(10점)	
전문성 향상 노력 (20점)	교육(5점)	
	경영체제별 교육 또는 시험(10점)	
총 점		

【세부평가를 위한 채점표】

기관명			
평가일자		평가자	(서명)

○ 최고경영자의 리더십(10)

평가항목	점 수	2.5
최고경영자가 표명한 조직의 비전 및 의지		
최고경영자가 설정한 조직의 방침 및 목표		
최고경영자의 이해관계자 및 조직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사회적 책임(예: 윤리경영, 사회공헌, 부패방지 등) 관련 의지 및 활동		

※ 관련 자료를 요약 제출하고, 현장조사 시 최고경영자 면담 등을 통해 정성적 평가

○ KAB 인정 기여도(15)

- 인증건수 (10점) (KAB에서 인정받은 범위 내 건수로 제한)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및 내용
KAB 인정 인증이 외국 인정 인증 비율 보다 높음 (KAB이 60% 이상)	10	
KAB 인정 인증과 외국 인정 인증 비율과 거의 유사함 (KAB이 50% 이상~60% 미만)	7	
KAB 인정 인증이 외국 인정 인증 비율 보다 낮음 (KAB이 30%이상~50% 미만)	4	
KAB 인정 인증이 외국 인정 인증 비율 보다 낮음 (KAB이 10%이상~30% 미만)	2	
KAB 인정 인증이 외국 인정 인증 비율 보다 낮음 (KAB이 10% 미만)	0	

- 경영체제 보유 수 (5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및 내용
KAB 인정 인증 경영체제 4개 이상 보유	5	
KAB 인정 인증 경영체제 3개 보유	4	
KAB 인정 인증 경영체제 2개 보유	3	
KAB 인정 인증 경영체제 1개 보유	1	

○ **인증신뢰성 제고 활동(20)**

- 심사실시보장 (1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및 내용
ARS 시스템 또는 이와 동등한 구축(심사기간 중 매일 시작/종료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10	
ARS 시스템 또는 이와 동등한 구축(심사 기간 중 매일 시작 또는 종료 중 1가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7	
ARS 시스템 또는 이와 동등한 구축(심사 기간 중 시작일과 종료일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5	
기타 확인 가능한(심사지 근방 영수증, 교통 영수증 등) 검증시스템이 있으며 중복심사/단축심사가 도출되거나 문제가 야기된 적이 없음	4	
검증시스템이 없으며 심사원 양심에 의존하고 있으나 중복심사/단축심사가 도출되거나 문제가 야기된 적이 없음	3	

- 인증신뢰성 제고 노력 (1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및 내용
KAB 우수심사원 또는 세계인정의날 개인 수상자 배출 실적이 있는 경우	5	
인증심사원 등록 공표제에 참여하는 경우	5	
기타 인증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자체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 최대 10점을 초과하지 않음.

○ 심사품질 검증시스템(20)

- 심사반과 독립된 인원에 의한 입회평가 (1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및 내용
최초 및 지속적 평가 모두 독립된 인원에 의한 입회평가 시스템 구축(지속적 평가의 경우 최소 5년에 1회 이상) 및 실행(90% 이상)	10	
최초 및 지속적 평가 모두 독립된 인원에 의한 입회평가 시스템 구축(지속적 평가의 경우 최소 5년에 1회 이상) 및 실행(70% 이상)	8	
최초 평가에만 독립된 인원에 의한 입회평가 시스템 구축	5	
상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0	

- 경영체제별 입회평가 (5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및 내용
최초 및 지속평가 모두 심사원이 보유한 경영체제별로 입회평가 시스템 구축 (지속평가의 경우 최소 5년내에 경영체제별로 입회) 및 실행(90%이상)	5	
최초 및 지속평가 모두 심사원이 보유한 경영체제별로 입회평가 시스템 구축 (지속평가의 경우 최소 5년내에 경영체제별로 입회) 및 실행(70%이상)	4	
최초 평가에만 경영체제별로 입회평가 시스템 구축	3	
상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0	

- 불만 및 이의제기 (5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및 내용
직전 3개년 간 접수된 불만 및 이의제기가 없으며, 인증심사 품질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최소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는 경우	5	
직전 3개년 간 접수된 불만 및 이의제기가 총 2건 이하이며, 인증심사 품질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최소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는 경우	3	
직전 3개년 간 접수된 불만 및 이의제기가 총 2건 이하이나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는 경우	2	
최근 3년간 접수된 불만 및 이의제기가 총 3건 이상인 경우	0	

※ 불만사항의 범위는 심사품질 또는 심사원의 윤리성(자질)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TL 9000 Trigger를 포함하여 KAB에 접수된 불만사항을 포함함.

○ **공평성 및 이해상충 예방(20)**

- **공평성관련 발견사항 (1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및 내용
KAB 인정심사시 공평성관련 부적합을 직전 3개년 간 1회도 받지 않은 경우	10	
KAB 인정심사시 공평성관련 부적합을 직전 3개년 간 1회 이하로 받은 경우	7	
KAB 인정심사시 공평성관련 부적합을 직전 3개년 간 2회 이하로 받은 경우	4	

- **최근 1년간 전속 심사원 활용율 (1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및 내용
등록된 총 심사원 중 전속심사원의 심사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10	
등록된 총 심사원 중 전속심사원의 심사비중이 60% 이상 70% 미만인 경우	8	
등록된 총 심사원 중 전속심사원의 심사비중이 50% 이상 60% 미만인 경우	6	
등록된 총 심사원 중 전속심사원의 심사비중이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5	
등록된 총 심사원 중 전속심사원의 심사비중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4	

※ '전속심사원'은 컨설팅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2개 인증기관 이하에서만 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심사원을 의미하며, 인증기관 특성에 따라 '상근' 및 '상임' 심사원을 포함함

※ 계산식 : (전속심사원의 총 심사MD)/(연간 기관의 총 심사 MD) x 100

○ 전문성 향상 노력(15점)

- 교육(설명회/워크숍/심포지움 등 모두 포함) (5점) (4시간 이상만 포함)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및 내용
인증기관에 등록된 심사원 70% 이상이 참여하는 설명회/워크숍/교육 연 4회 이상 개최	5	
인증기관에 등록된 심사원 70% 이상이 참여하는 설명회/워크숍/교육 연 3회 이상 개최	4	
인증기관에 등록된 심사원 70% 이상이 참여하는 설명회/워크숍/교육 연 2회 이상 개최	3	
인증기관에 등록된 심사원 70% 이상이 참여하는 설명회/워크숍/교육 연 1회 이상 개최	2	

※ 경영체제별 워크숍인 경우, 해당 경영체제에 등록된 심사원에 대한 참여비율로 계산

- 경영체제별 전문성 향상 교육 또는 시험(1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및 내용
인정받은 경영체제별 특화 교육/시험 실시 - 인정받은 경영체제에 대해 모두 실시	10	
인정받은 경영체제별 특화 교육/시험 실시 - 인정받은 경영체제 중 일부 경영체제에 대한 특화 교육/시험 실시(2/3 이하) 예) 품질, 환경, 안전보건 인정을 받고 품질, 환경에 대해서만 교육/시험 실시	7	
인정받은 경영체제별 특화 교육/시험 실시 - 인정받은 경영체제 중 일부 경영체제에 대한 특화 교육 실시(1/3 이하)	5	

※ 제외사항

- 최근 1년 이내 KAB인정 등의 각종 사후관리 시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 및 그 임원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대표자와 임원
- 인증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관과 그 임원
- 기타 법률위반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KOLAS 분야 개인상 포상 심사기준

□ 성명(소속) :

심사항목	기 준	배 점	점수
1. 근속기간	15년초과	10	
	10년초과 15년이하	7	
	5년초과 10년이하	5	
	5년 미만	3	
2. 기업형태	민간기관	10	
	공공기관	8	
	국가기관	6	
3. KOLAS 평가사 등록 상태	자격증 보유	10	
	자격증 미보유	5	
4. KOLAS 평가 참여 활동 또는 시험인증산업 육성 정책 참여 활동	5회 이상	10	
	1회~4회	7	
	미참여	5	
5. KOLAS 공인기관 담당업무	관리책임자	10	
	실무자	5	
6. 교육훈련 및 세미나 참가 또는 강의 (직전 3개년 간 실적)	10회 이상	10	
	5회 ~ 9회	7	
	4회 이하	5	
7. 비교 숙련도시험 참여 (직전 3개년 간 실적)	5회 이상	10	
	2회 ~ 4회	7	
	1회 이하	5	
8. 국제업무 활동 (직전 3개년 간 실적)	2회 이상	15	
	1회	10	
	없음	5	
9. KOLAS 표준화 활동 (직전 3개년 간 실적)	5회 이상	15	
	3회 ~ 4회	10	
	2회 이하	5	
총 10개 항목	-	100	

※ 평가방법

1. 근속기간

- KOLAS 공인기관(시험 및 검사분야)의 근무 경력을 확인
- 근속기간 : 15년 초과(10점), 10년 초과 ~ 15년 이하(7점), 5년 초과 ~ 10년 이하(5점), 5년 이하(3점)

2. 기업형태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특성
- 직종 : 민간기관(10점), 공공기관(8점), 국가기관(6점)

3. KOLAS 평가사 등록 상태

- KOLAS 평가사(시험, 검사분야) 자격증 보유 유무를 확인
- 보유 상태 : 자격증 보유(10점), 자격증 미보유(5점)

4. KOLAS 평가 참여 활동

-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로서 KOLAS 현장평가에 참여한 실적 확인
- 참여 횟수 : 5회 이상(10점), 1회~4회(7점), 미참여(5점)

5. KOLAS 공인기관 담당업무

- KOLAS에 등록된 관리책임자(품질책임자 및 기술책임자) : 10점
- KOLAS 시험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 5점

6. 교육훈련 및 세미나 참가

- 직전 3개년 간 참여한 KOLAS 교육훈련(교육과정, 보수교육 등) 및 측정기술 세미나, 세계인정의날 행사 참가 여부를 확인
- 참가 횟수 : 10회 이상(10점), 5회~9회(7점), 4회 이하(5점)

7. 비교 숙련도시험 참여

- 직전 3개년 간 KOLAS로부터 인정되는 국내·외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숙련도시험, 기관간 비교시험, 측정심사, 측정자간 비교시험)에 관리책임자 및 실무자의 자격으로 직접 참여한 실적을 기록(결과보고서, Raw Data 등)으로 확인
- 참여 횟수 : 5회 이상(10점), 2회~4회(7점), 1회 이하(5점)

8. 국제업무 활동

- 직전 3개년 간 KOLAS 관련 국제회의(국제규격회의, 세미나 포함) 참석 및 논문 발표 실적 확인
- 활동 횟수 : 2회 이상(15점), 1회(10점), 없음(5점)

9. KOLAS 표준화 활동

- 직전 3개년 간 KOLAS 제도 발전을 위한 회의체(인정위원회, 기술위원회 등) 참석 또는 표준 제·개정 제안 건수
- 활동 실적 : 5회 이상(15점), 3회~4회(10점), 2회 이하(5점)

KAS 분야 개인상 포상 심사기준

□ 성명(소속) :

심사항목	기 준	배점	점수
1. 근속기간	15년초과	10	
	10년초과 15년이하	7	
	5년초과 10년이하	5	
	5년 미만	3	
2. 기업형태	민간기관	5	
	공공기관	3	
	국가기관	2	
3. 직전 3개년 간 세미나 강연실적 (2배 인정)또는 세미나, 위원회(TF포 합) 등 참가 실적	10회 이상	15	
	6-9회	10	
	1-5회	5	
	없음	3	
4. 평가사자격증 보유 유무	자격증 보유	10	
	자격증 미보유	5	
5. 평가참여유무(직전 3개년 간)	5회이상	10	
	1-4회	7	
	미참여	5	
6. KAS 담당업무	관리책임자	15	
	실무자	10	
7. KAS 인정 획득 업무	직접참여	5	
	미참여	3	
8. 국제화에 대비한 국제업무 (PAC, IAF 등 KAS 관련) 참여	적극참여(최근 5년 2회이상)	15	
	일반적 참여(최근 5년 1회)	10	
	미참여	5	
9. KAS 표준화 활동 (직전 3개년 간 실적)	5회 이상	15	
	3회 ~ 4회	10	
	2회 이하	5	
총 10개 항목	-	100	

※ 평가방법

1. 근속기간

- KAS 인증기관의 근무 경력을 확인
- 근속기간 : 15년 초과(10점), 10년 초과 ~ 15년 이하(7점), 5년 초과 ~ 10년 이하(5점), 5년 이하(3점)

2. 기업형태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특성
- 직종 : 민간기관(5점), 공공기관(3점), 국가기관(2점)

3. 교육훈련 및 세미나 참가

- 직전 3개년 간 참여한 KAS 교육훈련(교육과정, 보수교육 등) 및 세미나, 세계 인정의날 행사 참가 여부를 확인
- 참가 횟수 : 10회 이상(15점), 6회~9회(10점), 1회~5회(5점), 없음(3점)

4. KAS 평가사 등록 상태

- KAS 평가사 자격증 보유 유무를 확인
- 보유 상태 : 평가사 보유(10점), 평가사 미보유(5점)

5. KAS 평가 참여 활동

-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로서 KAS 현장평가에 참여한 실적 확인
- 참여 횟수 : 5회 이상(10점), 1회~4회(7점), 미참여(5점)

6. KAS 인증기관 담당업무

- 관리책임자(15점)
- KAS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10점)

7. KAS 인정획득 업무

- 참여(5점)
- 미참여(3점)

8. 국제업무 활동

- 직전 3개년 간 KAS 관련 국제회의(국제규격회의, 세미나 포함) 참석 및 논문 발표 실적 확인
- 활동 횟수 : 최근 5년 2회 이상(15점), 최근 5년 1회 이상(10점), 미참여(5점)

9. KAS 표준화 활동

- 직전 3개년 간 KAS 제도 발전을 위한 회의체(인정위원회, 기술위원회 등) 참석 또는 표준 제·개정 제안 건수
- 활동 실적 : 5회 이상(15점), 3회~4회(10점), 2회 이하(5점)

KAB 분야 개인상 포상 평가기준

대상자		소속기관	
평가일자		평가자	(서명)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총배점	점수
1. 근속기간 (KAB 인정 인증기관)	10년 초과	15	15	
	7년 초과 ~ 10년 이하	10		
	5년 초과 ~ 7년 이하	7		
	5년 미만	5		
2. 심사원 보유 자격	3개 이상 경영체제 자격 보유	10	10	
	2개 경영체제 자격 보유	7		
	1개 경영체제 자격 보유	5		
3. 심사경험	120일/년 초과	15	15	
	100인·일/년 초과 ~ 120인·일/년 이하	13		
	80인·일/년 초과 ~ 100인·일/년 이하	11		
	70인·일/년 초과 ~ 80인·일/년 이하	9		
	60인·일/년 초과 ~ 70인·일/년 이하	8		
	60인·일 이하	7		
4. 강의/교육 경력	40시간 이상/1년	10	10	
	24시간 이상~40시간 미만	7		
	4시간 이상~24시간 미만	5		
5. 인증기관 내 적격성 보유자격	보고서 검증/인증결정	15	15	
	인증심사원 평가·교육	12		
	계약검토/내부시스템 업무 구축·개선	12		
	인증심사	10		
6. 인증관련 자기개발활동	국내외 표준화 활동 참여	15	25 (합산)	
	인정·인증 기준 관련 외부 교육/설명회 참석/강의	12		
	기타 인증심사에 도움이 되는 외부 교육/설명회 참석/강의	5		
	인증기관 자체 워크숍/교육 50% 이상 참석/강의(횟수 기준)	10		
7. 수상 경력	직전 3개년 내 KAB 우수심사원으로 선정	10	10	
합계점수			100	

* 관련 근거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방법

1. 근속기간 (15점)

○ 포상 신청자의 KAB 인정 인증기관 근속기간 평가 (상근/비상근 포함)

근속연수	10년 초과	7년 초과 10년 이하	5년 초과 7년 이하	5년 이하
점수	15	10	7	5

2. 인증심사원 보유자격 (10점)

○ 포상 신청자가 보유한 심사원 자격 수를 확인 (심사원보 제외)

	경영체제 자격 보유 수			
	3개 이상	2개	1개	0개
인증기관 적격성 부여	5	4	3	0
3자 인증기관 자격 등록	5	4	3	0

* 인증기관 부여 건수는 인증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격을 부여한 근거 확인되어야 함

* 계산 : 인증기관 적격성부여 + 3자 자격인증기관 등록 건수

3. 심사경험 (15점)

○ 포상 신청자의 연간 평균 심사일수(최소 0.5인·일 단위)를 평가 (직전 2개년 평균 값)

평균 심사일수	120인·일/년 초과	100인·일/년 초과 120인·일/년 이하	80인·일/년 초과 100인·일/년 이하
점수	15	13	11
평균 심사일수	70인·일/년 초과 80인·일/년 이하	60인·일/년 초과 70인·일/년 이하	60인·일/년 이하
점수	9	8	7

4. 강의 경력 (10점)

○ 포상 신청자의 연간 강의/교육 경력 평가. (직전 2개년 평균 값)

※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내부심사원 과정, 심사원 또는 기업체 대상 내부교육, 인증표준 관련 내·외부 교육, 심사기법 관련 내·외부 교육, 해당 인증표준심사 관련 법규 교육(환경법, 안전보건법 등)

5. 인증기관 내 담당업무 (15점)

○ 포상 신청자가 현재 소속된 인증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적격성이 부여되어 있는 업무

※ 두 개 이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점수 부여.

6. 인증관련 자기개발 활동 (25점)

○ 포상 신청자의 최근 1년간 인증관련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을 평가.

※ 해당되는 항목별 점수 모두 합산

7. 수상 경력 (10점)

○ 포상 신청자가 직전 3개년 내 KAB 우수심사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경우

※ 제외사항

- 인증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관과 그 임원
- 기타 법률위반 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자격인증기관으로 자격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3년간)
- 인증기관으로부터 자체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3년간)

[별지 제5호 서식] 단체부문

공 적 조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수공 기간	주요공적
0000000	대표이사	000	1900 ~ 현재	o
추천훈격	조 사 자		추천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기재생략 (인)				

※ 굵은선 안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음

공 적 조 서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등급 (직급·계급)	근무기간	
				년 월
공적요지(50자 내외)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본인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 굵은선 안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음

주요 학력 및 경력			
년월일	이력	년월일	이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월일	내용	년월일	내용
공적사항			

<작성요령>

1. 글자크기 13point, 휴먼명조체
2. (8)추천훈격은 장관상 기술표준원상으로 구분, (9)추천순위는 기재치 않음
3. 공적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추가로 작성하셔도 무방함

[별지 제7호 서식]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 직위 (급) :
- 성 명 :

포상추천 훈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2020 세계 인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2020년도 세계인정의 날 유공자 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조회하고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포상신청자

(인)

2020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